

2003. 8.

#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 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8.22	2003.8.25	2003.8.27	2003.8.28	기획감사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 용산동, 호암동, 목행동의 아파트 건설로 인구와 세대가 증가한 지역과 호암동 주민요청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통의 반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제4조(설치기준) 단서신설

- 조정사유 :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조항을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밀집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정하고자 함.

- 통·반 신설(통 9개, 반 59개)]
- 통·반 조정(연수 35통 : 세원아파트 104동)
  - 조정사유 : 연수동 제35통의 반구성이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설정되어 있어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통의 반을 조정하고자 함.
  - 조정사항 : 1개통 8개반 ⇒ 1개통 7개반으로 1개반 감소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기밀종사자로서 모든 서무담당자가 가입금지대상이었으나,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외 실·국·과의 서무담당자 등은 기밀업무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 2) 주요골자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 축소(안 제3조)
  -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  
⇒설립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업무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부서간의 업무의 형평성 유지 및 관련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청소년육성업무 분장사무 변경
  - 시민생활지원국 사회진흥과 ⇒ 기획행정국 주민자치과

### 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 설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주민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 통·반의 신설과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아파트 건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임.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 할 수 없다.
- 이중 기밀종사자로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제3항중 제1항제5호의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개정) 설립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인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를 시민생활지원국 사회진흥과 → 기획행정국 주민자 치과로 이관 부서간 업무의 형평성유지 및 관련업무의 분장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제2조제2항중(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서.....(추가 포함되는 개정조례안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리 · 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리 · 통및반설치 조례는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요망  
○답변 : 행정수행과 주민생활불편 초래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겠음.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범위 축소자를 확대 개정하는 사유는?  
○답변 : 가입금지 대상자중 서무기능 총괄하는 공무원외 실.국.과 서무 담당자 등은 기밀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 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감면 대상중 국가유공자 등급은 1~7급인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등급은 1~14급으로 급수가 다른 이유는?

○답변 : 신체장애등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 5. 심사결과

- |                                     |        |
|-------------------------------------|--------|
| 가. 충주시리 · 통및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안           | : 원안가결 |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6. 붙 임

- |                                     |        |
|-------------------------------------|--------|
| 가. 충주시리 · 통및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안           | 1부     |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부     |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부     |
| 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부. 끝. |